

#MeToo

성범죄 사건 보도와 언론에 필요한 기준

이혜은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들어가며

방송기자 A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인터뷰했다. 피해자는 실명과 얼굴을 모두 방송에 노출해도 좋다고 동의했다. 피해자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원은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피해자를 익명화하고 얼굴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를 '당당한 생존자'가 아닌,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존재'로 묘사하는 부적절한 보도일까?

2018년 3월, JTBC 뉴스룸은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를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인터뷰했다. 김지은 씨 인터뷰는 피해자에게 가감 없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스스로 사회적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였을까? 피해자가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2차 피해의 기폭제가 될 위험은 없을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피소된 이후 피해자측이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일부 언론들은 '피해자'라는 표현 대신 '피해호소인'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였다. 언론은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해야 할까?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른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할까?

여성폭력방지법¹⁾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 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2차 피해’로 정의하고, 피해자는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조 제3호 가목, 제14조 제3호). 법률조항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예시로 ‘언론 보도’가 명시되어 있을 만큼, 언론 보도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여성폭력방지법 제18조 제2항), 언론기관에 대하여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상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는 않으며, 언론인들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져 있다.

현재 성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한국기자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만든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2012), 여성가족부와 만든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2014년판, 2018년판) 등 상세한 매뉴얼들이 이미 존재하고,²⁾ 각 언론사도 개별적으로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보도 매뉴얼은 최소한의 원칙일 뿐, 앞서 언급한 사례가 보여주듯 성폭력 사건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어떠한 보도 방식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을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언론 보도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의 기본 토대로서 ‘성폭력 사건 보도의 최소 기준’을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의 기본 토대, ‘성인지감수성’

여가부 2018년 매뉴얼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 기준>으로 ①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 ②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③ 선정적, 자극적 보도 지양하기 ④ 신중하게 보도하기 ⑤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자주 오해를 사는 원칙은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원칙일 것이다.³⁾ 그러나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는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가부 2018년 매뉴얼은 위 다섯 가지 원칙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성폭력은 사회적, 경제적, 신

1) 정식명칭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나 ‘여성폭력방지법’의 약칭으로 주로 불린다. 편집자 주

2) 한국기자협회·여성가족부 (2018. 6).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주세요)>. 이하 <여가부 2018년 매뉴얼>은 미투 운동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언론 보도 사례들의 문제점,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표현,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간편 체크리스트 등 실무적 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e-book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 일례로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2020. 7. 29. “[단독] 박재동 화백, ‘치마 밑으로 손 넣은 사람에게 또 주례 부탁하나’ 미투 반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용으로 송고하였다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기사였다는 내부 비판에 직면하였다. 경향신문은 강진구 기사를 정계(정직 1개월)하였고, 강진구 기자는 이를 두고 “언론 노동자의 공정 보도와 사실 보도를 위한 노력을 침해하는 언론사 내부의 부당한 압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임을 감안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사실 확인 등 형식적 객관주의를 경계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로 보도하고, "언론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부당성이나 기계적 중립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구나 '사실 보도'라는 이름 아래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관계들이 부각되면, 사건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 스캔들로 묘사될 위험이 커진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자'라는 원칙은 '객관주의'라는 명목으로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사회통념을 재생산해 온 저널리즘 관행을 벗어나자는 주문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성폭력 사건이 놓인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자'는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결문에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언급한 2018년 판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사건 원고인 대학교수는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신체 접촉을 하고 데이트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된 뒤 해임의 적법성을 다투었다. 1심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성희롱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익명으로 이루어진 강의 평가에서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원고의 교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후 계속 원고의 수업을 수강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이 증명력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행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성희롱 피해자들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언론이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등을 판단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도 그대로 읽힐 수 있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로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보편성을 기본적인 원리로 하는 법의 해석에서 그 보편성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개별적 인간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감수성이 늘 필요한 것처럼,⁴⁾ 객관성을 원리로 하는 언론 보도에서도 그 객관성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개별적 인간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감수성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가해자의 공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거나 가해자와 평상시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다거나 피해를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든지, 이러한 사실관계가 언론이 주목할 만한 보도 가치가 있는 사실인지 판단할 때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1차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팩트 보도하지 않기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들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취재와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저널리즘 윤리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4) 김영란 (2019). <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파주: 창비, p.48. 참조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제50조 제2항 제2호). 다만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언론인을 상대로 형사 책임까지 묻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나주 아동 성폭력 사건, 이른바 ‘고종석 사건’ 당시 피해자 가족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성폭력 보도에서 언론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판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 피해자의 아버지가 술을 매우 많이 마시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게임광이라고 보도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 피해자 가정의 집 내부와 외부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그림일기, 독서록, 노트를 촬영한 사진과 그 내용, 피해자 가정의 월수입, 피해자의 상처 사진, 피해자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 등은 범죄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개할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아 언론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가합503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가합50737 판결).⁵⁾ 다만 법원은 보도 당시에는 동종 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공익적 목적만이 부각되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도 이후 반성적 고려로 언론사 등에 의해 성범죄사건에 대한 보도준칙 등이 제정된 점 등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였으므로, 이미 관련 보도준칙이 제정된 앞으로는 유사 사건에서 언론사의 법적 책임은 더욱 엄중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직업, 신분, 거주지와 근무지, 범죄 발생 장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인 인터뷰 등 여러 간접정보가 조합되면 피해자는 쉽게 특정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이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더구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사실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야기하는 선정주의로 흐르기 쉽다.⁶⁾

보다 근본적으로는 언론이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이유를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 속보 경쟁 속에 성폭력 사건 경위와 관련한 개별 사실들이 어떠한 맥락과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단독’ 취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서둘러 보도되는 경향이 있으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나 피해 사실에 관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사건은 가해자 대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인식되기 쉽다. 성폭력 사건이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 발생한 ‘사건’으로만 국한되어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수사기관 혹은 법정 증언을 맥락 없이 보도하면서 더욱 강화되기 쉽다.

2018년 이후 미투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왔지만, 성폭력이 개인의 일탈적 범죄가 아닌 사회 구

5) 이 사건들은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각 확정되었다.

6) <원치 않는 상관관계에 의한 출혈, 산부인과 진단서 들여다보니>와 같은 보도가 사실 보도로 포장된 선정 보도의 대표사례라 할 것이다.



조적 폭력임을 다루는 보도는 많지 않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방을 중계하는 보도 관행 속에, 양성 갈등 프레임은 더욱 공고해졌다. 2018년 1월 28일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에서 인터뷰를 한 날부터 4월 5일까지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보도한 뉴스들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225건의 보도 중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투 운동을 분석한 기사는 없었다고 한다.⁷⁾ “피해자의 최초 증언 이후 가해자의 근황에 대한 파파라치적 접근은 있지만, 사건 공개로 피해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는 서지현 검사를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언론들이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⁸⁾

‘성폭력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폭력 보도에서 담고 있는 사실관계가 ‘피해자와 피해사실에 관한 정보가 사건의 구조를 고발하는데 필요한 정보인지’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고민하여 보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비밀유지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 <김지은입니다>에서 김지은 씨는 JTBC 뉴스룸에 출연을 결심한 계기를 밝히고 있다. 변호사 제안으로 JTBC 탐사 보도팀을 만났고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 어떤 보도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자에게 이야기하고 보안을 요청하

7) 홍주현 (2018). 뉴스생산 환경에 따른 방송 보도의 선정성 네트워크 분석프레임 분석: 유명인에 대한 미투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8권 제7호, p.103-119. 참조

8) 최이숙 (2018). 백일 넘긴 미투 운동 보도 우리 언론성장했나?. <관훈저널>, 147호, p.58. 참조



였는데 바로 다음 날 안희정 측으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차라리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방송 직전 질문을 처음 보았고, 인터뷰 시간은 몇 분인지조차 알 수 없었으며, 경험한 일을 그대로만 말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인터뷰를 시작했다고 한다.⁹⁾ 안희정 측이 어떠한 경로로 사안을 인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박원순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피소된 이후 특정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취재하고 있다는 이른바 ‘찌라시’가 널리 유포된 경험까지 비추어 보면, 언론사에 성폭력 사건을 제보할 경우 보도 전까지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로 보인다.


성폭력 사건은 특히나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유지가 중요하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고(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제1호),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 제39조 제2항 제1의7호). 성폭력 사건을 제보받아 취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해명 등을 취재하여야 하는 것은 언론 활동의 일환이므로, 언론사에 수사나 재판과정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는 보도로만 발생하

9) 김지은 (2020). <김지은입니다: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서울: 불알람. p.26-30. 참조

는 것이 아니다. 보도 이전 취재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취재를 원하지 않거나 보도를 늦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취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신상 공개를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노출된 이후 사회적 파장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 가이드라인 숙지에서 출발하는 언론의 의무

과거보다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언론은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위주의 보도, 선정적 보도 등으로 2차 가해의 주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2년 이후 언론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성폭력 보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주요 언론사에 근무하는 10명의 여성 기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연구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이 언론사 내부에서 회람되거나 기자들이 인지하고 보도한 경우는 드물다.¹⁰⁾ 과거와 달리 피해자가 직접 얼굴과 목소리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새로운 취재 윤리는 어떠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소외되기 쉬운 형사 사법 절차에서 수사과 재판을 보도하는 방식은 어떠하여야 하는지, SNS로 미디어의 파급력이 더욱 높아지는 시대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어디까지 보도해야 하는지 과거보다 진전된 고민과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이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고 현존하는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0) 김세은·홍남희 (2019), 미투 운동(#MeToo) 보도를 통해 본 한국 저널리즘 관행과 언론사 조직 문화 : 여성기자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4권 제1호, p.39-88.